

#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주용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3월 20일

발 의 자: 이주용 의원 외 2명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, 제34조에 의거하여 평창군의회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수정(안 제3조)

1) 2019년 : 월 2,220,000원

2) 2020년 ~ 2022년

· 전년도 월정수당 + (전년도 월정수당 ×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라. 평창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경과

- 1)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: 2018. 11. 19.(월)
- 2)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1. 23.(금)
- 3)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1. 30.(금)
- 4)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2. 10.(월)
- 5)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: 2018. 12. 19.(수)
- 6)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2. 19.(수)
- 7)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8. 12. 28.(금)
  - 평창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(안)  
⇒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4,104만원 결정
- 8) 행정안전부 의정비 결정 관련 권고 : 2019. 2. 1.(금)
 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 위반
- 9) 제6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: 2019. 3. 13.(수)
  - 평창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(안)  
⇒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3,984만원 결정

##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제1항제2호의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연도	월 정 수 당
2019년	월2,220,000원
2020년	2019년 월정수당 + (2019년 월정수당 ×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2021년	2020년 월정수당 + (2020년 월정수당 ×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2022년	2021년 월정수당 + (2021년 월정수당 ×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 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-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>
  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  3. 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)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결정됨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제3조제5항 중 제1호 등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 총계	2020년		2021년		2022년	
		총 계	증 감	총 계	증 감	총 계	증 감
월정수당	186,480	189,836	3,356	193,252	3,416	196,731	3,479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주웅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1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의안발의  
찬성의원 서명(날인)부

○ 대표 발의 : 이주웅 의원

구분	직 위	성 명	서명(날인)
1	평창군의회 의원	지광천	지광천
2	평창군의회 의원	이명순	이명순